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 -

2019. 12.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 현황	4
III. 감사결과	10
1. 감사결과 총괄	10
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12
가. 요양병원 개설 및 관리·감독 분야	12
나. 요양병원 급여 심사·관리 분야	38
다. 요양병원 환자 안전관리 분야	65
[별표]	81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요양병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되었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요양병원 수와 요양병상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양병상 공급의 급격한 증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 입원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요양병원은 화재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가 곤란한 노인들이 많고, 장기입원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감사원은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요양병원 개설 및 관리·감독 분야, 요양급여 심사·관리 분야 및 환자 안전관리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표 1]에 열거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분야	감사중점
▪ 개설 및 관리·감독 분야	▪ 요양병원 개설허가의 적정성 및 요양병상 수급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요양병원 시설 및 의료인력 등이 운영기준 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 급여 심사관리 분야	▪ 요양병원 수가 등 급여기준은 적정한가
	▪ 급여기준을 위반한 청구사항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가
	▪ 부당 급여 등에 대한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 환자 안전관리 분야	▪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에 [표 2]와 같이 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 관련 주요 업무를 감사범위로 설정하였다.

[표 2] 요양병원 관련 기관 및 주요 업무 현황

기관명	요양병원 관련 주요 업무
보건복지부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운영 및 관리·감독 등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병원 수가 등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요양병원 감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 등에 따른 요양병원 개설허가 및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요양병원 감염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병원 요양급여 지급 및 부당허위 청구 확인 등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병원 요양급여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9. 7. 8.부터 같은 해 7. 19.까지 1단계(10일간), 2019. 8. 19.부터 같은 해 8. 30.까지 2단계(10일간) 등 총 20일간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하여 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실지감사에 앞서 2차에 걸친 자료수집(1차 2019. 4. 29.~5. 21., 2차 5. 27.~6. 14.) 기간 동안 요양병원의 운영 및 관리, 수가제도 등과 관련한 연구논문, 언론 보도,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지급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및 청구심사시스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추출·분석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9. 9. 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감사결과에 반영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2019. 12. 5.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현황¹⁾

감사대상 기관명, 법령명, 기타 용어는 다음 범례와 같은 약칭을 사용한다.

【 범 령 】

■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한다.

[기관명]

- ▶ 보건복지부: 복지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 ▶ 질병관리본부: 질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원

[법령명]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기준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급여기준고시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급여목록고시

[기타]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1. 요양병원 개요

가. 요양병원의 정의 및 연혁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1994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정하고 있다.

1) 감사대상 현황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된 내용은 아님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요양시설과는 [표 3]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

구 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법적 근거	▪ 「의료법」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비스 내용	▪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입원 및 입소 대상	▪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 환자 선택 및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 결정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65세 이상,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으로 장기요양등급(1~2급)을 받은 자
적용 보험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관련 법령 재구성

나. 요양병원 관련 주요 제도 연혁

요양병원은 1994년 신설된 이후 [표 4]와 같이 수가체계가 개편되고, 인력 및 시설기준이 강화되는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되어 왔다.

[표 4] 요양병원 관련 주요 제도

구분	관련 제도	주요 내용
2008년 1월	▪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 시행	▪ 행위별 수가에서 입원 일당 정액수가로 개편 - 7개 환자군별 및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2010년 7월	▪ 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인증 신청 의무화	▪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 ▪ 요양병원 인증 신청 의무화는 2013. 1. 1.부터 시행
2015년 5월	▪ 요양병원 인력 기준 강화	▪ 의사 수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에서 80명까지 2명(초과 40명마다 1명)을 두도록 함 ▪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2017년 2월	▪ 요양병원 시설기준 및 규격 강화	▪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 및 병실당 병상 수(최대 6병상) 제한

자료: 관련 법령 재구성

최근에는 2019년 4월 건강심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7개에서 5개로 개편하고, 일당 정액수가 수준,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구간 및 본인부담

상한금액의 지급방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방안이 의결되어 복지부는 이를 추진하고 있다.

【 2019년 건강심에서 의결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방안 주요 내용 】

-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7개 → 5개로 개편
 - 현행 분류체계는 의료 중점군(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과 요양 중점군(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군으로 구분하였으나, 의료 중점 위주로 정비하고 이 외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통합
-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입원료 체감제 개편
 - 현행 입원료 체감제(181일 이상 입원 시 입원료의 5%, 361일 이상 입원 시 10% 삭감) 구간에서 271일 구간을 신설(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 삭감)하고, 요양병원에 한하여 입원이력을 누적관리
- 본인부담상한금액의 지급방식 개선(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폐지)
 - 현행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의료비 할인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

다. 요양병원 관련 법령

[표 5]와 같이 요양병원의 기능, 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고,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본법으로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복지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과 요양급여기준, 그리고 그 세부사항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한 각종 고시와 예규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요양병원 관련 법령

구분	법률(대통령령)	부령(복지부)	고시(복지부)
기능, 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의료법」 · 요양병원의 요건 · 요양병원 준수사항 · 의료기관 인증 신청 · 병상 및 의료인 수급계획 등	「의료법 시행규칙」 · 요양병원의 운영 · 요양병원 시설기준 및 규격 · 요양병원 의료인 등의 정원 · 당직의료인 기준 등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 부담이득의 징수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요양급여 대상 및 가치 · 비용의 본인부담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요양급여기준 · 요양급여의 절차 ·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및 접수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 급여기준고시 · 행위, 약제, 치료재료 급여인정기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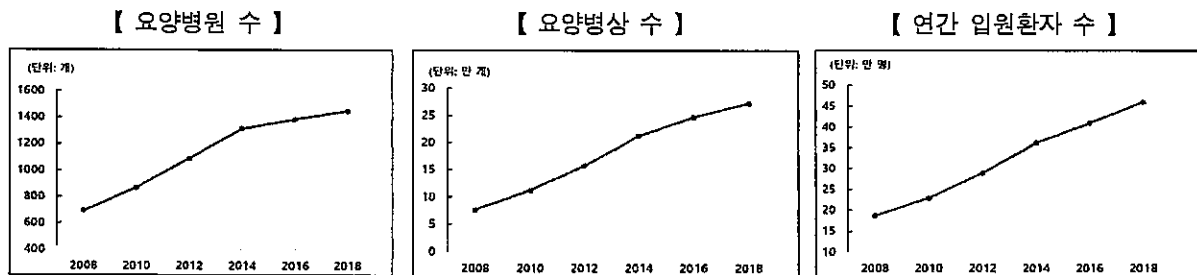
자료: 관련 법령 재구성

2. 요양병원 현황

가. 요양병원 증가 추세 및 환자 구성 비율

최근 10년(2008~2018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08년 499만 명에서 2018년 737만 명으로 47.7% 증가한 데 비하여 [도표 1]과 같이 요양병원 수는 109.4%(690→1,445개), 요양병상 수는 257.9%(7.6만→27.2만 병상), 요양병원 연간 입원환자 수는 146.8%(18.6만→45.9만 명) 증가하는 등 노인 인구 수의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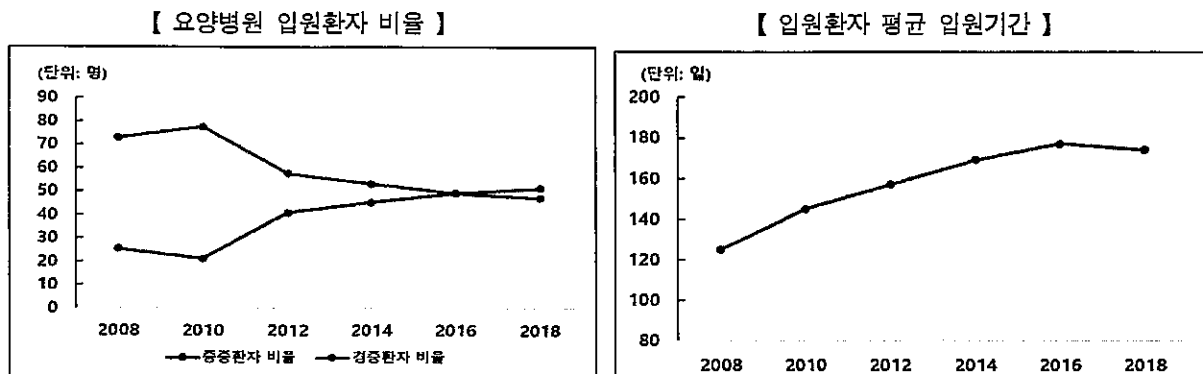
[도표 1] 최근 10년 사이 요양병원 현황 변화



자료: 심평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도표 2]와 같이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25.3→51.2%)이 지속 증가하고, 평균 입원기간(125→174일)도 증가하는 등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장기입원하는 양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2] 최근 10년 사이 요양병원 입원환자 비율 및 입원기간 변화



자료: 심평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전체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의 비중

최근 10년 사이 [표 6]과 같이 전체 요양기관 입원실 병상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1%인 반면, 요양병원은 13.5%이고,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 대비 요양병원 수의 비율은 2.0%에 불과하나, 병상 수는 전체 병상 수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전체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 병상 수 등 현황

(단위: 개, 병상, %)

구분	전체 요양기관(A)		요양병원(B)		비율(B/A)	
	기관 수	총 병상 수	기관 수	총 병상 수	기관 수	총 병상 수
2008년	57,628	472,297	690	76,608	1.2	16.2
2009년	59,255	495,701	777	90,144	1.3	18.2
2010년	60,585	528,288	867	111,992	1.4	21.2
2011년	61,869	573,566	976	133,279	1.6	23.2
2012년	62,853	601,588	1,087	156,803	1.7	26.1
2013년	64,081	630,114	1,210	185,998	1.9	29.5
2014년	65,571	660,099	1,314	212,130	2.0	32.1
2015년	66,896	674,646	1,335	230,115	2.0	34.1
2016년	68,476	692,500	1,384	246,172	2.0	35.5
2017년	69,808	701,744	1,418	259,146	2.0	36.9
2018년	71,102	707,349	1,445	272,223	2.0	38.5
연평균 증가율	2.1	4.1	7.7	13.5	-	-

주: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자료: 심평원 제출자료

또한 요양병상 수의 증가로 [표 7]과 같이 2008년 전체 요양기관의 총급여 비용 30.0조 원 중 요양병원의 급여비용은 총 1.1조 원으로 그 비중이 3.7%였으나, 2018년에는 총비용 66.2조 원 중 8.6%인 5.7조 원으로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요양병원의 연평균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17.6%로, 같은 기간 전체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7.7%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7] 전체 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의 연도별 요양급여비 현황

(단위: 조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기관(A)	30.0	33.6	37.4	39.6	40.8	43.3	46.2	49.2	55.0	58.8	66.2	8.3
요양병원 제외 전체 기관	28.8	32.1	35.5	37.3	38.0	40.0	42.3	44.9	50.1	53.5	60.5	7.7
요양병원(B)	1.1	1.5	1.9	2.3	2.8	3.4	3.9	4.3	4.9	5.3	5.7	17.6
비중(B/A)	3.7	4.4	5.1	5.9	6.8	7.7	8.5	8.8	8.8	9.0	8.6	

주: 백억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전체 합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건보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다. OECD 주요국의 요양병상 수 현황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는 [표 8]과 같이 2017년 기준 36.7개로 OECD 평균 3.6개보다 10배 이상 높고, 감소 추세인 다른 나라와 달리 증가 추세에 있다.

[표 8]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 현황

(단위: 개)

구분	OECD 평균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스웨덴
2010년(A)	4.1	21.0	11.8	3.2	1.8	1.2
2012년	4.1	27.9	11.1	2.9	1.5	1.0
2014년	3.8	34.1	10.3	2.7	1.3	0.9
2016년	3.7	36.4	9.8	2.5	1.2	0.9
2017년(B)	3.6	36.7	9.5	2.5	1.2	0.9
증 감(B-A)	-0.5	15.7	-2.3	-0.7	-0.6	-0.3

자료: 심평원 제출자료 재구성(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이는 국가별 요양병상 관련 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돌봄 대상에 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요양병상의 공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각종 정책 등의 시행으로 요양병상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9]와 같이 요양병원 개설 및 관리·감독 분야에서 20건, 급여 심사·관리 분야에서 6건, 환자 안전관리 분야에서 3건 등 총 2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9] 분야별 지적사항

(단위: 건)

구분	합계	주의	통보	
			일반	시정완료
합계	29	9	18	2
개설 및 관리·감독 분야	20	9	9	2
급여 심사·관리 분야	6	-	6	-
환자 안전관리 분야	3	-	3	-

분야별 감사결과 요약

가. 개설 및 관리·감독 분야

- (병상 수급관리) 복지부는 요양병상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병상수급에 대한 기본시책도 수립하지 않는 등 병상 수급관리를 하지 않음
 - 지난 10년간 노인 1만 명당 요양병상 수는 1.5→3.7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요양병원 급여비용이 1.1조→5.7조 원으로 증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가중
- (행정처분)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재판결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누락되는 문제 발생
 -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대여하여 유죄가 확정된 123명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되었고, 사무장과 공모한 의료인 3명은 처분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
- (개설허가) 2017년 2월부터 요양병원은 1병실당 6병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설규격이 강화, 그런데 지자체에서 6병상을 초과하는 과밀병상 요양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 8개 지자체에서 부당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 변경으로 8개 요양병원이 과밀병상을 운영

나. 급여 심사·관리 분야

- (본인부담상한제)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우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인데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이들의 장기입원이 가능
 - 2018년 기준 신체기능저하군은 장기입원 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2~9개월만 의료비를 부담하면 나머지 기간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부담 면제
- (수가산정) 복지부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을 경우 입원환자 식대를 지급하도록 한 고시를 2015년 삭제하여 식사 관리 부실
 - 2016년 이후 1년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요양병원이 74개
 - 또한, 심평원은 정액수가에 포함된 만성질환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거나, 입원환자 식대 가산 수가 산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급여를 과다 지급
- (정보공유) 지자체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은 복지부 등에 통보되지 아니하고 있어 부당급여 조사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2018년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등 251건의 처분 중 51건이 부당급여 확인 대상, 이 중 4건에 대해 실제 현지조사한 결과 11억여 원의 부당급여 확인

다. 환자 안전관리 분야

- (감염관리) 요양병원은 장기입원 및 노인환자가 많아 슈퍼박테리아 및 전염성 결핵 등 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발생 신고 누락 등으로 관리 사각 발생
 - 2017~2019년 27개 요양병원(35명)에서 슈퍼박테리아(CRE) 발생 신고를 누락, 2017~2019년 전염성 결핵환자로 확인된 72명에 대해 역학조사 등 누락

이에 대하여 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요양병상 등 병상 수급관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한하는 한편,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29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가. 요양병원 개설 및 관리·감독 분야

【 실태 】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표 10]과 같이 복지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관련 사항을 총괄하면서, 의료기관 인증(제58조), 병상 수급 관리(제60조),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제66조) 등을 통해 요양병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지자체는 「의료법」 등에 따른 요양병원의 개설 허가(제33조), 「의료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의 의료인 등 인력 정원, 시설·규격 및 운영기준과 「의료법」 외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양기관 시설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하고 있다.

[표 10] 요양병원 관리·감독 관련 기관별 역할

기관	관리·감독 체계 내 역할	관련 법령
복지부	- 요양병원 관련 법령·제도 등 총괄 관리 - 요양병원 기관 인증 및 병상수급 관리 등	「의료법」
지자체	- 요양병원 개설 허가 및 변경 신고 - 요양병원 운영 관리 및 행정처분 등	「의료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자료: 관련 법령 재구성

한편 2014년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요양병원은 장기입원 및 노인환자가 많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렵고, 전염병 등 감염 유행 시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복지부는 2014년 화재사건 이후 요양병원 진료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표 11]과 같이 2015년 5월부터 입원환자 40명당 1명이었던 요양병원 의사 정원을 입원환자 80명까지 2명으로 강화하고,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 1명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17년 6월에는 당직의료인 기준을 신설하였다.

[표 11] 요양병원 의료인 등 인력기준 정비 현황

구분	기 준	관련 법령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필요인력	▪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 1명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당직의료인	▪ 의사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 추가 ▪ 간호사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 추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자료: 「의료법 시행규칙」 재구성

그리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요양병원의 시설규격을 강화하여 2017년 2월부터 1병실에 최대 6병상 설치가 가능하고, 병상 간 이격 거리는 1.5m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3주기²⁾ 요양병원 인증(2021년)부터 환자안전 관련 중요 기준(화재안전, 감염관리, 인권보호 분야 등)을 필수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병원 인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 요양병원 인증 1주기는 2013~2016년, 2주기는 2017~2020년

가-4) 요양병원 개설허가 등 부적정[통보·통보(시정완료)·주의]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는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27조 제2항, 제28조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요양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하고, 요양병원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 시 이와 관련한 개설허가 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요양병원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설허가 또는 개설허가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시설기준 및 규격과 관련하여 2017. 2. 3. 요양병원 내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병실당 6개 병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규격을 강화³⁶⁾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를 개정·공포하였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2017. 2. 3.)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자가 규칙 시행일인 2017. 2. 3. 이전에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거나 병원 건축물을 소유·임차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는 요양병원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 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2017. 2. 3. 이후부터는 위 부칙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화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규격을 적용하여 6병상을 초과하는 병실을 운영하는 요

36) 종전에는 요양병원 입원실당 병상 수를 제한하는 시설기준이 없었음

양병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8개 지자체는 2017. 2. 3. 이후 관할 요양병원에 대하여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 변경 업무를 하면서 요양병원의 시설규격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별표 6]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등 명세”와 같이 ◇◇요양병원 등 총 8개 요양병원에 대하여 병실당 6병상을 초과하는 병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설허가 또는 개설허가 변경을 해 주었다.

【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 변경 부적정 사례 】

-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는 개별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시·군·구에 요양병원 개설허가 관련 업무를 위임
- (사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2017. 3. 20. ◇◇요양병원(개설자 G)에 대한 개설허가를 하면서
 - 위 요양병원은 2017. 3. 14.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강화된 시설기준(병실당 6병상 초과 금지) 적용대상인데도 총 53개 병실 중 15개 병실(43병상 1개 실, 7병상 14개 실)에서 6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설허가
- (사례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2018. 1. 24. ▷▷요양병원(개설자 H)에 대한 개설허가를 하면서
 - 위 요양병원은 2017. 11. 30.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강화된 시설기준(병실당 6병상 초과 금지) 적용대상인데도 총 42개 병실 중 3개 병실(7병상 2개 실, 8병상 1개 실)에서 6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설허가
- (사례 ③) 대구광역시 중구는 2017. 3. 15. ♡♡요양병원(개설자 I)에 대한 개설허가를 하면서
 - 위 요양병원은 2018. 4. 1.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강화된 시설기준(병실당 6병상 초과 금지) 적용대상인데도 총 25개 병실 중 24개 병실(7병상 10개 실, 8병상 10개 실, 10병상 4개 실)에서 6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설허가
- (사례 ④) 광주광역시 서구는 ◀◀요양병원(개설자 J)에 대해 2018. 10. 16. 개설허가 및 2018. 11. 7. 개설허가 변경 업무를 하면서

- 위 요양병원은 2018. 10. 15.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강화된 시설기준(병실당 6병상 초과 금지) 적용대상에 해당
- 그런데 2018. 10. 16. 총 12개 병실 중 2개(11병상 1개 실, 7병상 1개 실)가 6병상을 초과하는 데도 개설허가하였고, 2018. 11. 7. 총 35개 병실 중 6개(11병상 1개 실, 9병상 1개 실, 8병상 3개 실, 7병상 1개 실)가 6병상을 초과하는데도 개설허가 변경하였음
- (사례 ⑤) 충청북도는 2017. 12. 19. 및 2019. 3. 4. ♠♠요양병원(개설자 K)에 대한 개설허가 변경 업무를 하면서
 - 위 요양병원은 2017. 5. 25.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강화된 시설기준(병실당 6병상 초과 금지) 적용대상인데도 2017. 12. 19.에는 총 44개 병실 중 1개 병실(8병상 1개 실)에서, 2019. 3. 4.에는 총 52개 병실 중 3개 병실(7병상 2개 실, 8병상 1개 실)에서 6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설허가 변경
- (사례 ⑥) 경상북도는 2019. 2. 20. ♣♣요양병원(대표자 L)에 대한 개설허가 변경 업무를 하면서
 - 위 요양병원은 2017. 2. 8. 병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강화된 시설기준(병실당 6병상 초과 금지) 적용대상인데도 총 41개 병실 중 2개 병실(8병상 1개 실, 10병상 1개 실)에서 6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설허가 변경
- (사례 ⑦) 김해시는 2018. 2. 13. 및 2018. 4. 26. ○○의료재단 ■■요양병원(대표자 M)에 대한 개설허가 변경 업무를 하면서
 - 위 요양병원은 2017. 11. 9. 병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강화된 시설기준(병실당 6병상 초과 금지) 적용대상인데도 2018. 2. 13.에는 총 29개 병실 중 1개 병실(10병상 1개 실)에서, 2018. 4. 26.에는 총 39개 병실 중 2개 병실(10병상 2개 실)에서 6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설허가 변경
- (사례 ⑧) 하동군은 2017. 9. 12. ◆◆요양병원(대표자 N)에 대한 개설허가를 하면서
 - 위 요양병원은 2017. 7. 20. 병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강화된 시설기준(병실당 6병상 초과 금지) 적용대상인데도 총 16개 병실 중 4개 병실(7병상 4개 실)에서 6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설허가

그 결과, ◇◇요양병원 등 8개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규격을 위반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과밀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강동구, 성북구), 대구광역시(중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김해시, 하동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개설허가 또는 개설허가 변경 당시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6인실을 초과하는 과밀병상을 운영하게 된 요양병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63조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등 과밀병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충청북도지사, 김해시장, 하동군수는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규격을 위반하여 6병상을 초과한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등 과밀병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 변경을 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경상북도지사는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는 2019. 6. 24., 경상북도는 2019. 9. 11. 각각 ◀◀요양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하여 6병상을 초과하는 과밀병상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 변경을 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